

「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16년 8월 25일 함명섭의원의 5인이 발의하여 2016년 9월 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 필요
- 제184차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(2015. 4. 21 개최)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 의결되어 이에 맞게 한자로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회기의 규격 등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의회기 게양, 관리, 예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~제5조)
- 의원 배지 규격, 배지 교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배지 패용과 의회마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, 제9조)

3. 관련법령(또는 참고자료)

- 지방자치법

4. 검토결과

- 본 규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대하여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없이 사용해오던 것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.

- 이와 관련하여 2015년 4월 21일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되어 의결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 등 의회 상징물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

-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